

제427회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7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670)

상정된 안건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15) 2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2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57) 2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98) 2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670) 2

(14시11분 개의)

○소위원장 임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건의 특별법안에 대해서 지난번 심사에 이어서 오늘도 무쟁점 사항 위주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5개 특별법안에 대한 무쟁점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행정안전부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 산림청 이종수 기획조정관,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이 출석하셨고요.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에서 과장급 실무자가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청장의 경우는 오늘 대전과 세종 지역이 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 경보 단계여서 현장에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14시13분)

○소위원장 임미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무쟁점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번은 지난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이 오늘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3일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결과입니다. 아래의 점선으로 된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식은 특별법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피해지역 지원 및 복구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특별법에서 제외해서 일반법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개별 조문도 검토를 하셨는데 제1장 총칙의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은 그때 논의를 하셨고 논의하신 결과는 2페이지부터 9페이지 까지 소위자료에 정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오늘 논의하실 사항은 정부 측에서 수용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입니다.

이 건은 정부에서도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그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의원님들께서는 기속 조항으로 해서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내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재량 조항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계속 논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인데 이 건은 정부 측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박형수 의원님 안인데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반영하는 정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보급 지원인데 역시 박형수 의원님 안인데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산불 피해지역 및 지역주민의 회복 및 지원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바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아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정부에서 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인데 제정안은 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미를 명확히 해서 조문 정리 의견을 냄고, 인구감소지역 등 기금배분대상은 이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중복된 문구이므로 정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항인데요. 정부는 이달희 의원안과 같이 적용 기간을 수용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설치·운용이 2031년 12월 31일까지인 점을 반영해서 이달희 의원님 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16페이지, 중복지원 제한입니다.

이 건은 정부에서 의원님들 안을 수용했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 추모사업입니다.

추모사업의 목적이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과 재난대응 인식 제고인데 각호 사업 예시가 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에 관한 사항은 뒤에 심리상담·문화예술활동·치료·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 통합해서 규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단서는 국가가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국가 지원은 자체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것도 기속 조항과 재량 조항으로 나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피난시설의 명칭은 재난안전법과의 정합성을 위해서 대피시설로 수정을 했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2항과 3항은 추모시설의 의견수렴과 위치 선정에 관한 건데 그 주체를 위원회로 할지 국가 등으로 할지 한번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에 위원회로 하는 경우에는 향후에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항과 5항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인데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제 및 규제 유예는 별도의 조항으로 통합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표해서 산림청하고 같이 하시겠습니까?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원래는 재난안전본부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위원님들 논의에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어제부터 호우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조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의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처 간의 의견은 피해자하고 피해지역 지원계획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재원 문제라는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자구 수정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금융위에서 답변하실 거고요. 3번 에너지 보급 지원도 산업부에서 답변을 하실 사항입니다.

15쪽의 4번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배분’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정안의 내용이 주로 기금의 배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배분’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선 배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기금의 배분 관련, 이 조성 주체가 시도가 조성 주체이고 시도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는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서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문구로 인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적용 시한은 이달희 의원님 안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운용이 2031년 12월 31일까지인 점을 반영해서 이 내용을 2031년까지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중복지원 제한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추모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재난대응 인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재난대응 인식 제고 관련해서는 개별 항목 중에 재난 대피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이 이러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성이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부분에도 재량조항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적용 내용이 피해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속규정으로 하기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단 주체에 위원회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 필요성이라든지 역할이 아직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추모사업과 관련해서도 피해지역마다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속규정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 중에 산림청은 관련 조항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요? 지금 어느 부처가 또 얘기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입니다.

저는 추모시설 설치 시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간소화·면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일반법에 대한 특례를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인데요. 이번 케이스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대한 예외를 이런 규정되는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학계에서도 이 같은 방식은 특별법 체계를 훼손한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월호 사고나 작년 연말의 여객기 사고 등에 있어서 유사 입법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들은 빈발성이 낮은 국지적 사회재난에 한정된 사항으로서 이번같이 기후위기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산불이나 자연재난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것을 동일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GB 법령에서 이러한 추모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안에 규정할 실익이 적다라는 입장인데요. 산불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크게 파괴된 상황에서 추모시설을 무분별하게 GB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또 다른 환경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절차

에 따르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정부 측 의견, 혹시 다른 부처에서 이야기하실 게 있나요?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청에서 3번 에너지 보급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박형수 의원님께서는 2호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오른쪽 비고의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보면 시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호를 바꾸는 게 적합하겠다고 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 3호에도 보면—이것은 자구 수정인데요—‘취약계층 지원’을 무엇을 지원한다는 게 없어서 ‘에너지 지원’으로 해서 ‘에너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부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고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1쪽의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안심사 자료로는 이게 45쪽인데요, 여기 검토의견으로는 11쪽입니다. 살펴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미애** 예, 이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별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은, 지역에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노력하여야’, ‘노력한다’로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사람들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현장 가 보시면 이 얘기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자면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다른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저도 이달희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는데요. 지금 다른 유사 입법례에서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네요?

○**소위원장 임미애**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피해 지원·복구와 관련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복구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임미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사 입법례에 보면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반영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임의규정이 아닌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저희는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유사 입법례도 있고 위원님들 논의하신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인데요, 소위자료로는 80쪽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태선 의원님 그리고 이만희·이달희 의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렇게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14쪽의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박형수 의원님의 발의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성무 위원 이것은 오히려 정부안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불이 났기 때문에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제대로 펼쳐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R&D 사업이라는 것은 산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은 질문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얘기할 때 박형수 의원님의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역의 산림 훼손이 굉장히 심각하고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지역에서 있습니다.

이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법안의 문구가 적절한 게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으로 담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부 측 의견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담기는 게 맞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면 이것은 용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 어떻습니까?

○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그것은 산업부의 의견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부가 조금 이따가 도착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위원장 임미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

○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거기 오른쪽의 박스의 비고에 보시는 것처럼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위원장 임미애 조성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예, 시범사업도 있고 조성도 하고 보급도 하고 5항에 보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허성무 위원 보급사업으로 해도 충분할 겁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정부 측 의견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그 밑에 2항 부분은 조금 수정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2항이요?

○이달희 위원 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동의하고 2항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해야 한다’로 바꾸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은 박형수 의원님안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달희 위원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로 좀 더 강화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임미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43조 2항입니다. 2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지원’……

○이달희 위원 ‘하도록 노력한다’.

○소위원장 임미애 ‘하도록 노력한다’.

○이달희 위원 예, 이래야……

○소위원장 임미애 굉장히 못 미더우셔서……

○이달희 위원 아니, 지방 공무원들이 이런 조항이 있어야 들고 가서 이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호소할 징검다리를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서천호 위원 43조 본문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1항·2항·3항, 3항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체계를 본문부터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이달희 위원 그러면 본문부터 바꿔 주시고요.

○소위원장 임미애 거기 1항에 보면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우선’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서천호 위원 ‘우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달희 위원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서천호 위원 ‘우선’이 들어 있으니까.

○이달희 위원 ‘우선’ 되어 있으니까 ‘우선 지원할 수 있다’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살펴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이달희 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아요.

○박정현 위원 저는 행안부에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연 1조잖아요?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저는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지금 경북 산불도 그렇고 대개 산불이 나는 지역, 앞으로도 그럴 지역은 소멸 대상 지역이거나 소멸 관심 지역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법이 이렇게 되면 이 기금으로 다 감당이 되겠어요?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연도별로 연 1조 원의 재원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내역을 보면 공모 형태가 됐든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하는데 그게 여러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은 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불 피해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부분이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다 이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 노력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 위원** 가중치를 두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지금 인구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한 72억, 정률로 배분하는 게 72억이고 전년도 사업을 잘하면 16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가중치를 두면 얼마나 더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가중치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좀 해서 보고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산불의 향후 유형으로 봤을 때 지방소멸기금에 너무 의지하는 것, 이게 다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 다른 지역의 지방소멸기금이 줄지요, 이게 풍선효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게 의무 규정, 그러니까 기속 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재량 규정으로 수정의견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전체적으로 재원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금의 총괄적인 정립이라든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량 규정으로 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참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조항을 그렇게 저희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저희한테 답변을 하실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연 1조 조성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예.

○**소위원장 임미애** 그런데 이런 재난이 지금의 추세대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 이 재난이 지금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함께 대안으로 제시해 주셔야 저희가 재량 규정으로 배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이 조문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전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원 확대 방안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소멸 위험에 있는 지자체들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하고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기보다는 이 조성 주체라든지 지원하는 것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시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우리가 지금 간파하고 있는 게 산불대응체계나 나라 전체의 산불에 대한 게 아니고 지금 발생한 8개 시군에 관한 특별법이고 이게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산불로 피해가 나서 생업이 어렵고 또 황폐된 걸 우선 좀 복구를 해서 정상화시키고 다른 지역하고 같이하자는 거지 여기에 집중해서 그 기금을 다 쓰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날 산불 이런 거는 국가 전체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법이 통과되면 해야 한다고, 통과가 되면 또 산불이 대형으로 나면 이 기금으로 이 입법례에서 그렇게 대응한 경우가 있으면 기금을 넓혀야겠다 이런 고민이 있을 거고 지금은 특별법이니까 8개 시군에 대한 복구에 관련된 거니까, 이 부분은 또 한시적이잖아요.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면 ‘우선 배분한다’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천호 위원** 위원장님.

○**박정현 위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계속…… 제가 먼저 조금만……

○**서천호 위원** 먼저 하세요.

○**박정현 위원** 이달희 위원님 말씀이라서.

이달희 위원님 지금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이 특별법이 경북 산불 때문에 일어났는데 앞으로 산불이 일어나면 다른 지역도 또 특별법을 만들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선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지역은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사실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쨌든 조금 우리가 무리수를 두는 것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산불은 대형으로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특별법 안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 8개 지역이라고 하지만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긴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례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국장님,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약 1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배분 기준으로 보면 107개 시군에서 9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한 10% 정도 여유를 두고 차등 지급을 하지요?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지금 현재 원칙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예.

○서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풀로 잡아서 산불 피해지역에 10% 전체를 다 준다손 치더라도, 10% 범위 내에서. 그러면 한 30억 정도, 많게는 50억 정도 특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 총량으로 봐서도 얼마 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기후위기가 계속 일상화된다는 전제하에 이와 유사한 산불이 또 발생할 것이다를 전제로 해서 피해 복구하는 데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복구지원책을 강구한다면 저는 앞뒤가 바뀐 조치라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그 총량을 늘리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1조이기 때문에, 또 이게 8개 시군의 피해복구지원금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면 나머지 107개 시군에서—잠정적으로, 발생되지도 않았지만—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특별법 자체를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특별한 피해를 입은 그 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달희 위원님, 1항이지요, 1항의 ‘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배분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배분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107개 시군에는 피해 상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0%의 포션이 있다는 얘기거든, 거기의 10% 포션 범위 내에서 우선 배분을 하게 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좀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달희 의원안의 57조 제1항 내용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위원장님,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임미애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아까 위원장님도 걱정하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재원 자체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새 정부에서도 확대 쪽으로 가는 거를 정책지향점으로 삼고 있는데 다만 이게 연도별로 1조 원 조성이 법률에 있는 사항이라서 약간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확대하는 취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재량 조항을 말씀드린 건, 물론 모든 지금 위원님들 취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기금 조성·운용 주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총괄관리는 하고 있지만 조성 주체가 시·도지사들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들이 조성·운용 주체로서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저희가 재량 조항으로 둠으로 인해서 이 결정 권한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를 남겨 두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달희 위원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소위원장 임미애 김형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기금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지요, 법이 조성된 지가?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22년에 만들어져서요. 지금 3년……

○김형동 위원 지난번 국회에 만들어졌고 작은 경험이지만 짧은 경험이지마는 그때 저도 행안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아는데, 첫 번째 동의하는 것은 이 기금이 1조에 머물 것이냐. 많은 위원님들께서 상황이 좀 바뀌고 있고 산불하고 관계 없이 늘려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이 소멸대응기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선 배분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두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인데요.

차제에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럴까. 왜 이것 ‘한다’라고 해도 되느냐 하면 지금 1조 조성했는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이걸 배분해 줘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언젠가 이게 쌈짓돈 비슷하게 해 가지고 쭉 나눠 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국장님, 이 담당 국장님은 아니시겠지마는 이 대응기금 자체에 가서 뭐 쓰는지 보고 오신 적 있습니까? 정말 나랏돈을 그냥 임의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도 똑같아요. 안동·예천 지역도 똑같은데 대응기금 1조, 그게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인데 그냥 쭉 나눠 주니까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똑같이 받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번에 대응기금 쓰는데 목적을 제대로 다시 한번 보시고.

불 탄 지역 그대로 놔두면 다 소멸됩니다. 맞지요? 불났기 때문에 지금 7개, 8개 광역 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자체단체장들 밤낮없이 뛰어다니는데 거기다 기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찔끔찔끔 나눠 줘 가지고 언제 저거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 데 거기다 돈을 투입해 가지고 댐을 만들어야 되지요. 똑같습니다. 불난 자리에 가서 빨리 그걸 재건을 해 줘야, 복구를 해 줘야 그 마을이 살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담당 부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응기금을 집행하는 부서한테 목적을 하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쓴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정말 이번에 사라질 수 있는 지역에다가 과감하게 투입해 가지고 살려 놓고, 그래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제대로 쓰이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 문구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대응기금 1조를 편하게 쌈짓돈으로 나눠 주지 말고 지금 이번 계기로 그 용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번에 또 물난리 날 가능성이 있는 데 집중적으로 투하하십시오. 왜 그걸 그냥 나눠 줘 가지고 단체장들, 더 할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감사하세요, 감사, 제대로 썼는지.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래서 ‘배분한다’라고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더 이상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우선 배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선 배분한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격에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예, 지금 김형동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으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한 데, 일괄적으로 배분 형태가 아니라 필요한 데 사용하는 부분으로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것은 조성 운영 주체로서 자자체의 결정권 이것을 배려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위원회 위원님들 논의 결과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그러면 ‘우선 배분한다’ 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의원들 안과 다 같아서 넘어가도 되겠지요?

그러면 16쪽입니다.

중복지원 제한과 관련된 조항인데요. 이게 의원님들이 낸 의견과 같아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쪽입니다.

추모사업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살펴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사업을 ‘지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뒀는데, 그 옆의 의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따로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다른 분 말씀이 없어서……

국토부 반대의견은 저는 좀 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세월호피해지원법하고 우리 케이스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고.

우리가 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산불이 지금 사회재난하고 그 이외를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산불뿐 아니라 추후 발생 가능한 재난과 관련하여 추모시설이…… 해당한다면 특별법에 대한 예외규정을 다른 특별법에 개별 규정하기보다’, 저는 이 설명을 잘 이해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그 문구는 그냥 반대한다 이렇게밖에는 안 읽히는데 저 같은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재난과 재난을 비교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산불특별법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이후에 난 재난 중에 제일 큅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일어난 재산 피해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자에 2000년 이후에 난 산불 다 합쳐도 이게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교를 할 때 재난과 재난을 비교해도 엇비슷한 걸 비교해서 그때는 이렇게 하

는 게 맞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세월호를 비교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면 자연재해의 기 유형과 자연재해 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정부가 제한을 했다라는 취지라면 지금도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뒤도 된다 이거면 설명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준에 제가 본 데이터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건데 근자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산불을 다 합쳐도 이것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민도요 한국전쟁 때 일어난 이재민, 사망자 말고 그 이후에 재난과 관련돼서 일어난 이재민 지금 안동 같으면 1300, 의성은 얼마입니까, 1000 넘을 걸요? 우리 지역만 해도 삼사천 가까운 이재민주택이 곱하기 1.5 하면 경남북 다 합치면 거의 1만 명이 집을 잃고 있는데 그게 추모가 됐든 추모 할배가 됐든 간에 뭔가 설명이 석연치 않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준의 률대로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우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하시면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어쨌든 피해 규모가 엄청 크다라는 것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당연히 이견이 없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취지는 이번 재난의 성격을 그래도 조금 달리 볼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제도가 이 추모시설을 아예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허용을 하고 있고요, 허용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대로 법이 통과가 되면 아무런 사전 환경성 검토 없이, 환경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바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 점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기준에 있는 제도대로 허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막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그 뒤에 유사 입법례 12·29여객기참사법에 보면 추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런데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에는 ‘국가 등은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하나는 ‘하여야 한다’로 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추려면 위에도 ‘할 수 있다’면 밑에도 ‘할 수 있다’여야 하고, 그러니까 24조가 ‘시행할 수 있다’면 밑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는 ‘할 수 있다’, 하나는 ‘하여야 한다’하면 이게 법체계상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라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미애 예,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우리가 산불이 나고 다급하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두 의원님 입법안에 보면 추모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10·29이태원참사에 보면 추모비, 추모기념관 이런 것은 이태원은 아주 중요한데 경북의 산불이나 이런 것은 아주 넓은 지역에, 5개 시군이 있고 이러니까……

제가 물라서 그러는데, 그 밑의 6호 같은 경우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의 관련 사업’ 이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경북 같은 경우 노령화가 계속 이어지고 또 교육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추모사업 중에서도 비나 이런 것은 그 센터 안에다가 세우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추가 검토를 부탁할 수 있는지. 앞에, 법에 없는데 보완 입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추모시설이 산불지역에 오는 게 의미가 있지 희생자에 대한 단순한 추모기념사업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과 관련해서 19쪽에 있는 그 법안에 의하면 여러 추모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급하게 만들면서 법이 빠져 있다는 거지요, 내용이?

○이달희 위원 예, 3호·6호 이런 것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을 추가해서 담아 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이게 대전제인 전체 목표가 아까도 저희가 재난 대피시설 관련 말씀드리면서 목적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재난대응 인식 제고, 이렇게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재난 대피시설 설치 관련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같은 맥락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추모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추모사업 등에 포함시키고 일단은 이 적용범위를 피해지역, 피해 주민들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특별법에서처럼 대상 범위까지 넓히면서 갈 거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개별 호를 추가하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저는 이달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혹시 절차상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보면 재난을 당해서 피난을 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적 피해를 안 입은 분들도 흔히 말하면 조그마한 불길만 보더라도 손이 떨린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것을 충분하게 이재민이나 그런 분들을, 지금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

이게 트라우마센터 이런 것을, 뒤에 별도의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10·29 참사에 준하는 추모시설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항에 담을 수 있다면 저는 담는 것이 이 법 취지에 좀 더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거기 3호에 나와 있는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이 정도의 대형 산불이 기후위기의 새로운 산불의 형태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문제로 기후위기에서 산불이나 산림 관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넣어서 3호, 6호, 7호 ‘그 밖의 관련 사업’까지 같이해서 입법 보완을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건 조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황충연**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데 만약에 개별 호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항에 있는 전체 목적 범위, 목적이 적용되는 범위가…… 아까 예방사업들이 들어간 그 특별법은 목적에도 예방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번 논의할 때 정리된 문구로, 정리된 조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추모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번 논의할 때 최종 확정 짓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것 역시 추모사업과 관련된 내용인 데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 끝인데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황충연** 위원장님, 18페이지의 2항에서도 기속조항이냐 재량조항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정리를 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런데 2항의 ‘수렴할 수 있다’ 이것만 정하면 되나요? 이게 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여서……

○**전문위원 황충연** 일단 정부안에서는 주체가 ‘국가 등’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 논의하시면서 이건 위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니까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것 결정해 달라는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18쪽의 2항인데요. 2항에 보면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 의견이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정부 의견으로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달희 위원** 정부 의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 앞부분은 다음번 쟁점사항 논의할 때 정리하는 걸로 하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더울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상경 투쟁도 하고 하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우리 법안의 소위 심사 완결을 언제쯤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또 본회의, 정기회의 들어가고 이러면…… 저희가 열정을 좀 내겠습니다. 휴가를 반납하라 하면 반납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청드리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달희 위원님의 의견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피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휴가기간이기도 한데요 최대한 8월, 정기국회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위원님들이 함께 힘을 내 주시면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허성무 위원 빠르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임미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형동 박정현 서천호 이달희 이원택 임미애 허성무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충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정우진

산림청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